

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의원

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

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구로구 제2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의원입니다.

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청소년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기관의 지원금을 동의 없이 인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재산 갈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,

이에 금융피해 관련한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6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‘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 상담,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’의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.

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보호취약층인 가정 밖 청소년들의 그 권리가 보장받고,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